식품 안전 정보

1. 위생 점검

1)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급식소 등 30곳 적발

(2025-04-17, 중앙일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급식소 등 30곳이 적발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학교 ·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등 4만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음.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 ·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음.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방침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2) 경남도 특사경, 위생관리 부실 산업체 집단급식소 16곳 적발

(2025-04-22, 부산일보)

집단급식소 운영 신고 조차 하지 않거나 위생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남도 내 공단 주변 급식소들이 위생점검 과정에 무더기로 적발됐음.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산업체 집단급식소 54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1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음. 이번 단속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도내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음. 위반 사례별로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1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임. 단속된 A 업소는 특정 산업체 위탁급식 계약을 하고 하루 300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았음. 이 업소는 4년 넘게 1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음. 이같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위생점검이나 식중독 예방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 다른 위탁급식업체 3곳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음식물을 냉동고에 오래 방치하는 등 식품위생 관련 의무를 위반했음. 또 다른 B 업체는 1회 급식인원이 100명을 넘겨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임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음.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15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3)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점검…'식품위생법 위반' 9곳 적발

(2025-05-14, 뉴스클레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가 적발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어학원, 기숙학원 등)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음. 이번 점검은 17개 시 · 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음.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음.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임.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임. 조리식품 · 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 ·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 · 규격에 적합했음.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4) 충남도 특사경,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12건 적발 · 조치

(2025-05-28, 프레시안)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대형마트 등 500여개 업소의 축산물 취급업소 단속에서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음. 이번 단속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단속한 것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됨. 위반 사례는 식육 표시사항 일부 거짓표시 1건,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7건 등임. 단속과 함께 실시한 한우 유전자 검사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확인검사는 학교 급식 납품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에서 판매중인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검사를 의뢰해 실시했음. 검사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됐으나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를 통한 개체 이력번호 검사에서 불일치 사례가 적발됐음.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시행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임.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 · 변조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음.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음.

2. 식품첨가물

1) 인공감미료 등 식품첨가물, 제2형 당뇨병 위험 ↑

(2025-04-22, 메디칼타임즈)

인공감미료를 포함한 특정 식품첨가물 혼합군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인구가 매일 식품첨가물 혼합물에 노출되고 있으나, 이들 혼합물의 상호작용 및 장기 건강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임. 특히 당뇨병은 식습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대표적 대사질환임에도 첨가물 혼합노출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전향적 대규모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인공감미료를 포함한 특정 식품첨가물 혼합군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연구진은 각 식품첨가물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온 기존 안전성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혼합노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의 영양 코호트인 NutriNet-Santé를 기반으로 분석에 나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모집된 10만 8643명의 성인으로 연구 기간 동안 반복적인 24시간 식이기록을 통해 섭취 식품을 보고했으며, 이 정보에 산업용 식품 브랜드 데이터를 결합해 식품첨가물 노출량을 추산함. 연구진은 다수의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와 실험실 분석자료를 통해 개별 식품 내 첨가물 종류와 함량을 추정했고, 비음수 행렬 분해(NMF) 기법을 통해 실제 식습관에서 자주 함께

섭취되는 첨가물 군집을 도출함. 식품첨가물 혼합군을 5개로 구분했는데 분석 결과 이 중 두 군이 제2형 당뇨병 발생률과 유의하게 연관됨. 첫 번째 혼합군은 변성전분, 펙틴, 구아검, 카라기난, 폴리인산염, 소르빈산칼륨, 커큐민, 잔탄검으로 구성됐고, 당뇨병 발병 위험은 약 8% 증가함. 두 번째는 구연산, 시트르산나트륨, 인산, 황암모니아카라멜, 아세설팜-K,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라비아검, 말산, 카르나우바왁스, 파프리카추출물, 안토시아닌, 구아검, 펙틴이 포함됐고 발병 위험은 13%가 올라감. 나머지 세 혼합군은 당뇨병 발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음(HR=0.98~1.02). 이번 연구는 실제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식품첨가물의 복합노출이 대사질환과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는지를 최초로 대규모로 입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현재 식품안전성 평가는 개별 첨가물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혼합효과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일부 조합에서는 안전기준 이하라도 장기적으로 대사질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임.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널리 소비되는 두 가지 식품 첨가물 혼합물에 노출되는 것과 더 높은 제2형 당뇨병 발생률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밝혀냈다"며 "잠재적인 시너지/길항 효과를 포함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림.

2) 제발 먹지 마세요… 흔한데, 수명 단축하는 '식품'의 정체

(2025-04-29, 헬스조선)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초가공식품은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가공과 변형이 많이 된 음식을 말함. 대표적인 예로는 즉석식품 및 냉동식품, 햄과 소시지, 라면, 포장된 제과류, 탄산음료 등이 있음. 브라질 오스왈도 크루즈 재단의 에두아르도 닐손 박사 연구팀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영국, 미국 등 8개국의 기존 연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각국 국민의 평균 식단에서 초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과 조기 사망률을 계산함. 그 결과, 식단에서 초가공식품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모든 원인에 의한 조기 사망 위험이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초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조기 사망 비율은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는 약 4%에 그친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14%에 달함. 미국의 경우 2017~2018년 사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약 12만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초가공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조기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초가공식품은 심장질환, 비만, 당뇨병, 특정 암, 우울증 등 32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함. 연구 저자인 닐손 박사는 "초가공식품의 건강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초가공식품 소비를 자제하고, 지역의 신선하고 최소한만 가공된 식재료에 기반한 전통 식단을 장려하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다"고 말함.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예방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에 최근 게재됨.

3) 쓴맛 · 떫은맛 개선 위해 바이오기술 이용 스테비올배당체 제조 허용

(2025-03-19, 식품저널 food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비올배당체의 쓴맛과 떫은맛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에 바이오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18일 고시함. 추출법으로 제조된 현행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약간의 쓴맛과 떫은맛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개정 기준 · 규격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기술(Bio-conversion)을 이용,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함. 또, 식품을 제조할 때 보존료, 표백제 등 용도로 사용되는 무수아황산에 대해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함량 규격과 불순물 제한 규격 등을 설정하고,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을 신설함. 현재는 잔탄검과 젤란검을 제조할 때 제조 용매로 이소프로필알콜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주정(에탄올)도 허용하고 있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 용매에 주정을 추가했으며 인베르타아제, 페룰린산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함. 이번 개정 기준 · 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무수아황산 · 원료(유황)의 성분규격 신설과 스테비올배당체의 성분규격 개정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3. 원산지표시

1) "중국산 된장인데 국내산으로"…배달앱 등 원산지 표시위반 106곳 적발

(2025-03-18, 중앙일보)

충청남도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 · 오삼불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함. 위반물량은 1200kg이었고, 위반금액은 1000만원에 달해 형사입건됨. 강원도 B유통업체는 국내 타지역산 한우와 강원도 홍천산 한우를 혼합해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강원도 홍천으로 거짓 표시함. 위반물량은 1만1000kg였고, 금액은 4억9700만원에 달했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14일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정기 단속을 실시, 거짓 표시 업체 65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힘. 이 중 미표시 업체 41개소에는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됨.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추려낸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 업체(106개소)의 84.9%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3개소가 적발돼 전체의 12.3%를 차지함.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남.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으로 만든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속여 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 주소 · 위반 내용 ·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됨.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농식품 생산 · 유통 ·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음.

2) 온라인 식품 원산지 표시 '눈속임' 여전…농관원, 통신판매 특별단속서 67곳 적발

(2025-04-30, 푸드아이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온라인 유통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7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됨. 이번 단속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됨. 농관원은 사이버 단속반 295명을 투입해 온라인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사전 탐지한 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음.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42개소 ▲원산지 미표시 25개소가 적발됨. 이 중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후 수사 절차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미표시 업체에는 총 7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형사처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는 ▲중국산 팥을 사용한 떡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호주산 소고기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에 국내산으로 혼동될 수 있는 표기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임. 특히 재범 업체의 경우, 2년 이내 동일 위반이 반복되면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해당 통신판매

중개업자 정보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최대 1년간 공표됨.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제품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음.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판매자는 법적 책임과 함께 자율적인 표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이나 위반 사례는 농관원 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음.

3) 서울 봄꽃 축제장 음식점 단속…원산지 거짓표시 12곳 적발

(2025-04-20, 뉴스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일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인근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음. 민사국은 서울시의 봄꽃 축제 일정이 확정되자 전국적인 상춘객 유입을 대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했음. 이번 단속은 맛집으로 알려진 음식점의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를 사전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35개소를 선별해 진행됐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농관원)와 함께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뤄졌음. 적발된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로, 원산지 거짓표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주요 사례에는 A업소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와, B업소가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정보 제공한 사례가 있음. 또 C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며 메뉴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 배추김치’로 기재해 혼동을 일으켰음. 특히 D업소는 SNS를 통해 유명해진 맛집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적발됐음.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민사국은 불법 행위 적발의 대부분이 시민 제보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음. 신고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가능함.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됨. 강희은 민사국 직무대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가 제공되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방지 ·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4. 수입식품

1) 소비기한 속인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 · 스페인산 올리브유 적발

(2025-04-02,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토마토 가공품 · 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음.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위반 실태 수사에 착수했음.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수입해 보관 중인 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이를 감추고 유통 · 판매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음.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한

뒤 식품제조 ·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 박스, 9,4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음.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1,015개, 3,300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음. B사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 박스에는 스티커를 부착, 소비기한을 변조했음. 식약처는 조사 과정에서 압류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 · 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음.

2) 일본산 '밤만주'서 세슘 검출…수입절차 중단

(2025-04-28, 농민신문)

일본산 견과류를 가공해 만든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돼 수입이 중단됐음.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18~24일 일본산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땅콩 · 견과류 가공품인 '쿠리킨톤'에서 1 Bq/kg(kg당 베크렐 · 방사능 강도 측정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음. 쿠리킨톤은 밤에 설탕을 넣어 삶아서 만드는 일본 과자로, '밤만주'의 일종임. 삶은 밤을 으깨 헝겊에 한 움큼씩 넣고 다시 밤 모양으로 형태를 잡아 만들며 찰기가 없는 것이 특징임.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인체에 다량 축적될 경우, 불임과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행히 세슘의 양은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인 100 Bq/kg를 한참 밑돌았음.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대신 수입을 취소하거나 제품을 반송 · 폐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이번 쿠리킨톤 수입업체도 수입절차를 중단하고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음. 당초 수입 물량은 40kg 이었음.

3) 식약처, '위생불량'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46곳 적발

(2025-04-04, 아시아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음. 식약처는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 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 · 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 · 제조 · 가공 · 처리 · 포장 · 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함. 2023년말 기준 약 4만 9,000여 개소 등록돼 있음.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 · 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음.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 · 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 · 벽 · 천장 위생관리 등이 미흡했음.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 · 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 ·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음. 이 밖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했음.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4) "현지 맛을 내려고"...제주 중국음식점 식자재 불법 유통 적발

(2025-05-15, 조선일보)

제주지역 중국 음식 전문점 2곳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적발됐음.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제주시의 한 고급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34)씨가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 · 판매(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등)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음. A씨는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 ㎏, 건채소 10 ㎏, 녹차 5 ㎏ 등 총 37.5 ㎏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음.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라고 진술했음. 지난 5월 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음. 동업자 B(45)씨와 C(46)씨는 올해 1월 개업한 뒤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 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음.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류 총 173 ㎏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음. 이들은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며 "체인점을 추가적으로 열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음.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는 총 210 ㎏ 분량임.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 식품을 반입해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또한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5. 식중독사고

1) '81명 집단 식중독 증세' 전주 모 초교.. 인체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2025-05-26, 전주MBC)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환자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 전주시보건소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교직원과 학생 81명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7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식중독의 원인균일 가능성을 추가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음.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여름철에도 발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한편 올들어 5월 둘째 주까지 발생한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 신고는 전국적으로 110건으로, 최근 3년 평균 84건보다 31% 증가하였음.

6.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소분 판매' 허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대 개막

(2025-03-20, 식품저널 foodnews)

소비자가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건강기능식품을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본격 운영됨. 새 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소분 판매가 허용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 · 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임.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했음.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임.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음. 영업자는 소분 · 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 캡슐, 환),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과 관련, 식약처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함. 소비자는 상담할 때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함. 또,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음.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음.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2) 맥주효모 · 비오틴 탈모 예방 식품, 건강기능성 인정 받지 않아

(2025-04-01,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에 의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 비오틴 함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맥주효모나 비오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을 받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의 안전성, 비오틴 함량, 표시 ·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표시 · 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모발의 윤기 ·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기장밀추출복합물, 피쉬콜라겐펩타이드 등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 뿐임.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Saccaromyces)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발, 두피, 손톱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비오틴은 체내 대사 및 성장에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B7)으로 식약처에서 지방 · 탄수화물 ·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영양강화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이나 모발 건강과 관련한 기능성이 인정된 바 없음. 결국, 맥주효모 · 비오틴 등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은 원료를 첨가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고 있는 셈임.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의 각각 1%, 10%에 불과했음. 또한 비오틴을 첨가하지 않은 1개를 제외한 29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0μg)보다 약 0.1배에서 35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비오틴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결핍이 일어나지 않고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도 거의 없음. 또,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고 체내 대사과정에서 흡수된 비오틴을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결핍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 한편, 조사대상 30개 중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 · 치료', '탈모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 · 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의 광고를 하고 있었음.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 · 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 · 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 · 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임. 아울러 소비자에게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음.

3)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광고 등 '104건 적발' (2025-05-05, 데일리메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 · 혼동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등 104건이 적발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음. 우선,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인 혈행건강, 관절건강, 비염 등으로 광고 ·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음. 점검 결과 위반 게시물 104건을 적발했음. 주요 위반 내용은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 · 치료 효능의 인식 우려 광고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9건), 기관지보호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거짓 · 과장 광고(3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혈행개선제 등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2건)임.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음.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체 1,971곳을 점검한 결과, 표시 · 광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체 총 2곳을 적발했음.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에 대한 기능성분 · 영양성분 함량, 대장균, 중금속 등 기준 ·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180건도 수거 · 검사했음. 검사 결과 제품 3건(국내 1, 수입 2)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과산화물가(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붕해시험(영양소 · 기능성복합제품)에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음. 국내로 정식 수입 전(前) 통관 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114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임.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면서 "허위 · 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4)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금액 제한 폐지 (2025-05-07, 청년의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음. 아울러 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변경했음. 식약처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음.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여 8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식약처는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음.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을 통해 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 요건이 간소화됨. 기존에는 개인별 누적 총 10회 · 30만원 이내로 제한됐으나, 변경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액 제한을 삭제하고 누적 총 10회 이내로만 제한함. 소비기한 요건은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잔존 제품'에서 '소비기한 내(소비기한이 명확히 보이도록 게시)'로 변경됨. 표시사항 요건도 '모든 표시사항이 명확히 보이도록 게시'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명확히 보이도록 게시'로 간소화했음.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시판 · 팝업창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 방법, 불량식품 구매 시 신고 방법, 해외직구식품 및 의약품 거래 금지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음. 이외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에서 거래, 미개봉 제품(최소 판매단위 포장), 실온 또는 상온 유통 제품, 위반 게시글 삭제 조치 등의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됨. 식약처는 '당근', '번개

장터' 이외에도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또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 ·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임.

5)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최대 2.6배 인상 방침

(2025-06-02, 식품저널foodnews)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심사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신규 신청 수수료를 전자민원의 경우 171만원에서 450만원으로 2.6배 인상하는 등 대폭 올릴 방침임. 현재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관련 신규 신청 수수료는 전자민원 171만원, 방문 · 우편민원 190만원, 변경 신청 수수료는 전자민원 72만원, 방문 · 우편민원 80만원이지만, 식약처 방침이 확정되면 수수료는 신규 신청의 경우 전자민원 450만원, 방문 · 우편민원 500만원, 변경 신청은 전자민원 180만원, 방문 · 우편민원 200만원으로 오름.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30일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업무가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심사원 확충 등을 통한 심사업무 신속 처리를 심사 수수료 인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 조합을 위탁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작업실과 소분 · 조합 시설을 보유한 다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계약서를 영업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작업실과 소분 · 조합실을 보유한 다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 조합을 위탁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위탁계약서를 영업소에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음.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해 정책 수립과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적는 란을 마련했음. 또,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업신고사항 변경 또는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했음.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9일까지 받음.

7. 유해물질&잔류농약

1) 중국산 수입 양파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PLS 전수조사 해야

(2025-03-24, 농수축산신문)

최근 중국산 수입 양파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지난 6일과 11일, 각각 평택항으로 수입된 냉동 양파와 신선 양파에서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이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의 기준치인 kg당 0.01mg을 4배 초과한 0.04mg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이에 양파 생산자들은 정부에서 양파 수확 철을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 저율할당관세(TRQ) 공매 입찰을 공고해 국산 양파의 안정적인 가격을 위협한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음.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특히 양파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임에도 수입 양파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음. 이에 양파생산자협회는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수입국의 농약 사용에 대한 철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수입하는 양파뿐만 아니라 민간 수입 양파, 모든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PLS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2) "요즘 많이 먹던데" 주문 제작 케이크, 자칫하다간 … '사용 금지 색소'에 '잔류농약'까지

(2025-05-07, 헬스조선)

개인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되는 등 소비자 주의가 요구됨. 7일, 한국소비자원은 SNS에서 광고하는 주문 제작 케이크의 안전성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음. 조사 대상은 개인적인 사진이나 문구를 인쇄하는 '포토프린트' 케이크, '생화장식' 케이크, '레터링' 케이크 각 5개씩 총 15개 제품임. 조사 결과, 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대상 포토프린트 케이크 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됐고 다른 포토프린트 케이크 1개 제품은 타르색소 함량이 사용 기준을 초과했음. 아조루빈은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적색 색소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아조루빈 혼합물에 노출될 경우 과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독성이 적은 수용성 산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과다 섭취시 간독성, 혈소판 감소,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조사대상 생화케이크 5종 모두 먹을 수 없는 화훼용 꽃을 케이크에 직접 꽂거나 잎을 붙여 장식하고 있었음. 조사대상 케이크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1개 제품의 장식용 꽃에서 메트라페논(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살균제), 플룩사메타마이드(살충제)가 검출됐음. 케이크를 장식하는 꽃은 식용이 아니므로 잔류농약 기준이 없는 상태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비식용 꽃으로 케이크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꽃의 줄기, 잎 등을 랩이나 포일로 감싸 케이크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그러나 전 제품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케이크가 꽃에 사용된 농약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화, 포토프린트, 레터링 케이크의 제조 · 판매 사업자에 비식용 장식 꽃의 취급 방법, 사용하는 색소의 종류와 함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생화, 포토프린트, 레터링 케이크 등 신유형 케이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요청할 계획임.

3)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기준치 5배 '잔류농약'검출...어떤 제품?

(2025-05-15, 소셜타임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 헥사코나졸이 기준치(0.01 ㎎/㎏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힘. 헥사코나졸은 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농약임.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헥사코나졸은 1㎏당 0.01㎎ 이하인 기준치의 5배인 0.05㎎로 나타났음. 회수 대상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회사에서 수입한 2025년 생산한 베트남산 포멜로 제품임. 해당제품은 10㎏ 박스에 6개가 들어 있음.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량은 23,760㎏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음.

4)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 잔류농약 '10배 초과'

(2025-05-22, 대한급식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힘. 회수 대상 제품에서 농약이 기준치보다 10배나 많은 0.1mg이 검출됐으며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28일로 표기된 제품임.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회사를 통해 109,740kg이 수입됐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음.

8. 기타

1) 대전시,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5건 적발

(2025-05-13, 충남일보)

대전시는 지난 3~4월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음.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음. 적발된 위반 사례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 2건과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 3건으로 나타났음. 대청호 · 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조리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무신고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음. 김혜경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 · 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2) '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9곳 적발

(2025-05-14,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학원을 비롯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 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44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이번 점검은 청소년 체험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것임.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임.

3) "글로벌 리더십 입증"…한국, '아프라스'의장국에 재선출

(2025-05-16, 뉴시스)

한국이 제3회 아시아 · 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APFRAS 2025)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의장국에 재선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밝혔음. 이로써 향후 3년간 한국은 아프라스를 아 · 태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식품협의체로 성장시키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제주 2025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음. 올해 회의에는 한국,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참가했으며,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아태 지역 식품 규제조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공유 및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음. 그 결과 올해 초 회원국 간 식품안전 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CES 식품안전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고 수출기업은 규제 장벽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됨.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확하고, 쉽게, 빠르게 규제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현재 10개국 10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의 활용을 확대해 종이증명서 위 · 변조를 차단하고, 통관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으며, HACCP 역량교육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함. 오유경 처장은 15일 중국 및 태국 식품규제기관장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규제 차이로 수출이 제한되는 식품의 수출 허용, 시험성적서 인정 등 규제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음. 또한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주요 수출국 규제당국자와 직접 만나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으며, 말레이시아 규제당국자를 초청한 규제설명회를 개최해 K-푸드 수출 확대를 지원했음.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반 식품안전관리, QR코드 활용 식품표시, 스마트 HACCP 등 첨단기술이 소개됐고, 행사장 내 부스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대표 제품을 전시하며 K-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함. 아프라스는 2023년 5월 7개국과 2개 국제기구로 시작해 올해 13개국과 3개 국제기구로 확대됐으며, 앞으로 '아태 과학 · 식품안전 협의체'도 아프라스 산하에 포함돼 조직의 규모와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임. 참고로 아태 과학 · 식품안전 협의체는 위해평가 등 과학적 협력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실무급 회의로, 제5차 회의는 오는 1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임.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글로벌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재선출된 만큼 식약처는 아태 지역 식품 규제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조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원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